

안산시자원회수시설민간위탁동의안

의안 번호	938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0. 12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□ 요구이유

한국수자원공사에서 건립중인 안산시자원회수시설(소각장)이 2001년 4월 우리시에 인계될 예정으로 있어 소각장의 안정적인 시설운영 및 경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운영을 추진코자 함.

□ 주요골자

가. 위탁시설명 : 안산시자원회수시설

나. 민간위탁근거

- 폐기물관리법 제58조(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·위탁)
- 안산시자원회수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4조(자원회수시설의운영등)

다. 위탁사업내용

- 소각로등 관련시설의 유지관리
- 소각재배출 및 처리
- 자원회수시설 부대시설의 유지관리

라. 위탁기간 : 착수일로 부터 3년

마. 계약방법 : 제한경쟁입찰

바. 위탁사업자 선정 : 적격심사 기준

□ 관련법령 발췌서

- 안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
- 폐기물관리법 제58조
- 안산시자원회수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4조
-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
- 행정자치부예규 제59호

안산시자원회수시설민간위탁동의안

안산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에 대하여 「안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.

가. 위 탁 운 영

- 시 설 명 : 안산시자원회수시설
- 소 재 지 : 안산시 초지동 661-5번지 일원
- 시설규모 : 200톤/일 × 1기 (스토커방식)
- 부지면적 : 66,940㎡ (20,250평)

나. 민간위탁 근거

- 폐기물관리법 제58조(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·위탁)
 -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법에의하여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등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·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자에게 위탁할수 있다.
- 안산시자원회수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4조(자원회수시설의 운영등)
 - ①자원회수시설의 관리·운영은 직영으로 하되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다. 위탁 사업 내용

- 소각로등 관련시설의 운전 및 유지보수
- 반입되는 폐기물의 계근 및 확인
- 소각재 배출 및 처리
- 침출 오·폐수의 처리
- 자원회수시설 부대설비의 유지관리
-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필요한 일반사무처리

라. 수탁사업자 선정

- 법적근거
 -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
 - 행정자치부예규 제57호
- 위탁 운영기간 : 착수일로부터 3년
- 계약방법 : 제한경쟁입찰
- 위탁사업자 선정방법 :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심사
기준에 의거 심사

붙 임 : 1. 관령법규 발췌서 각 1부. 끝.

안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

안산시조례 제875호
(1999. 10. 9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)에 의하여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.)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안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,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민간위탁”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수탁기관”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 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.

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경기도자치위임사무는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

제7편 행정지원 제2장 인사 안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

시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수탁기관의 선정기준)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 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, 민간위탁 운영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.

제6조(수탁기관 선정)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

②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 하고,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.

제7조(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) ①민간위탁기관의 선정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안산시민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명 내지 9명의 위원으로 하되,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,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.

③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수탁사무의 처리)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제9조(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) ①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,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.

②수탁사무에 관한 권한 행사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.

제10조(협약체결등) ①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제7편 행정지원 제2장 인사 안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

②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, 위탁내용, 위탁기간, 수탁비용에관한사항,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.

제11조(지휘·감독) ①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·감독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.

②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
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12조(사무편람) ①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·처리기간·처리과정·처리기준·구비서류·관련서식·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②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13조(처리상황의 감사) ①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전에 체결된 민간위탁 협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.